

부 산 가 정 법 원

심 판

사 건 2015느단755 면접교섭

청 구 인 가AAAAA (외국인등록번호 *****-6*****)

주소 시흥시

송달장소 안산시

상 대 방 김BB (*****-1*****)

주소 부산

소송대리인

사 건 본 인 1. 김CC (*****-4*****)

주소 부산

등록기준지 부산

2. 김DD (*****-4*****)

주소 부산

등록기준지 부산

주 문

1.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.
2.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상대방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허용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8. 9. 12.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둔 사실, 그러던 중 청구인이 2012. 11. 8. 가출하였고, 상대방이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44355호로 이혼 및 친권, 양육자 지정 청구를 제기하여 2014. 11. 19.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, 청구인의 가출 이후 현재까지 상대방의 동생이자 사건본인들의 고모인 김EE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, 청구인은 가출 이후 이 사건 청구 이전까지 사건본인들이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 적이 없는 사실,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에 대한 기억이 없고, 고모인 김EE의 보살핌 하에 비교적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경위, 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상황과 면접교섭 현황, 사건본인들의 현재 나이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, 청구인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,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보인다.

그렇다면,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
심판한다.

2015. 12. 7.

판사 이 영 범